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이인식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9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보급 및 이용촉진(안 제8조)
-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6조 및 안 제7조)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악교육, 창작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함
- 보급 및 이용촉진(안 제8조)
- 단체의 육성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다. 검토의견

- 상위 법령으로 볼 수 있는 「국악진흥법」이 2023. 7. 25제정, 2024. 7. 26시행을 앞두고 있음.

본 조례안은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금천구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